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발의년월일 : 2002. 11.
발 의 자 :

1. 개정이유

공무원여비규정(대통령령 제17484호)이 개정되어 국내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실소요액에 맞도록 인상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○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 인상

가. 의장, 부의장 : 1야당 41,000원 → 46,000원

나. 의 원 : 1야당 22,000원 → 25,000원

3. 신구조문대비표 : 별 지

○ 관계법령 :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(별표2),
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
4. 참고자료

○ 관계법령 :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(별표2),
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【별표 1】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료(1야당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숙 박 료 (1야당)
의 장 부 의 장	46,000
의 원	25,000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의 장 부의장	1등급	2 등 정 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의 원	2등급	2 등 정 액	정액	정액	10,000	25,000	18,000

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
2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
3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.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【별표 1】

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 비 (1일당)	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일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의장 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**41,000**	25,000	의장 부의장	·	·	·	·	·	**46,000**	·
의원	2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**22,000**	18,000	의 원	·	·	·	·	·	**25,000**	·